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1년 1월 (서면)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공고 : 2021년 1월 18일(월)

전송결과 상세보기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상세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성공 미수신 안내 새로고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메시지 종류</td> <td>1000자메세지</td> <td>• 실패 상세내역</td> </tr> <tr> <td>• 메시지 제목</td> <td>1월 (서면)이사회 알림, ** 1</td> <td></td> </tr> <tr> <td>• 수신번호</td> <td>0316726121</td> <td></td> </tr> <tr> <td>• 전송시간</td> <td>2021-01-18 오후 5:55:52</td> <td></td> </tr> <tr> <td>• 전송건수</td> <td>21 건</td> <td></td> </tr> <tr> <td>• 성공</td> <td>15 건</td> <td></td> </tr> <tr> <td>• 실패</td> <td>0 건</td> <td></td> </tr> <tr> <td>• 전송중</td> <td>6 건</td> <td></td> </tr> </table>	• 메시지 종류	1000자메세지	• 실패 상세내역	• 메시지 제목	1월 (서면)이사회 알림, ** 1		• 수신번호	0316726121		• 전송시간	2021-01-18 오후 5:55:52		• 전송건수	21 건		• 성공	15 건		• 실패	0 건		• 전송중	6 건	
• 메시지 종류	1000자메세지	• 실패 상세내역																							
• 메시지 제목	1월 (서면)이사회 알림, ** 1																								
• 수신번호	0316726121																								
• 전송시간	2021-01-18 오후 5:55:52																								
• 전송건수	21 건																								
• 성공	15 건																								
• 실패	0 건																								
• 전송중	6 건																								

○ 일 시 : 2021년 1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무지개회의실

기록 : 채수진

<회의 순서>

1. 개회선언

『총 이사 21명 중의 21명의 서면결의서』를 확인하고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함

2. 이사장 인사말 : 생략

3. 보고 : 서면 보고함

4. 심의 안건

[1호 의안] 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가구원 승인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가구원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동법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이 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0년 11, 12월에 가입된 조합원의 가구원**들을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11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11/3	7328	2	우동희	610511-2
2	11/9	7331	2	문연경	690710-2
3	11/10	7332	2	윤은영	800114-2
4	11/10	7332	3	장민서	101112-4
5	11/10	7332	4	장민유	170621-4
6	11/11	7333	2	이재준	780324-1
7	11/11	7333	3	이정연	180225-4
8	11/11	7333	4	이효연	190212-4
9	11/11	7334	2	김미숙	600911-2
10	11/11	7334	3	유태경	890924-1
11	11/12	7335	2	백운길	730312-1
12	11/12	7335	3	백지혜	930617-2
13	11/16	7337	2	박종길	470110-1
14	11/18	7339	2	김현주	680423-2
15	11/18	7339	3	이재호	910627-1
16	11/18	7339	4	이재영	921002-1
17	11/25	7341	2	박순정	710414-2
18	11/25	7341	3	김지수	000602-4
19	11/25	7341	4	김지현	010730-4
20	11/26	7342	2	김태실	520815-2
21	11/23	7343	2	이종식	650125-1
22	11/23	7343	3	이혜인	940611-2
23	11/26	7344	2	고운학	040402-3
24	11/26	7344	3	고운성	080713-3
25	11/10	20811	2	김영재	800214-1
26	11/10	20811	3	김지운	161208-3
27	11/10	20811	4	김시은	181127-4

○ 2020년 12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12/2	7346	윤일남	760423-2	과천시 과천대로
2	12/2	7346	박금애	390327-2	과천시 과천대로
3	12/2	7346	김하은	010917-4	과천시 과천대로
4	12/2	7346	김권민	040427-3	과천시 과천대로
5	12/2	7346	김진민	071030-3	과천시 과천대로
6	12/3	20814	한승열	680229-1	안성시 대덕면
7	12/3	20814	한찬규	020129-3	안성시 대덕면
8	12/3	20814	조준희	041011-3	안성시 대덕면
9	12/3	20814	이도현	100404-3	안성시 대덕면
10	12/3	20814	김가람	110203-3	안성시 대덕면
11	12/3	20814	유수혁	120330-3	안성시 대덕면
12	12/3	20814	김은결	130318-3	안성시 대덕면
13	12/3	20814	김태양	140129-3	안성시 대덕면

14	12/7	20815	이규창	480201-1	안성시 양성면
15	12/18	7356	윤병섭	971206-1	안성시 2동 석정동
16	12/22	20816	장정숙	450123-2	안성시 공도읍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2호 의안] 각 위원회별 2020년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각 위원회) 2020년도 사업평가를 위한 최종안이 각 위원회별로 논의되어 취합되었습니다. 이에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별도의 사업계획안을 보고합니다.

※ 별 첨 : 2020년도 안성의료협동조합 사업평가 안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3호 의안] 2020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대의원총회 방식 결정의 건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나 회의 등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03월 02(1차), 03월 29일(2차)로 계획되어 있는 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준비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4호 의안] 2020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대의원 결산총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상정 의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차 대의원 총회 >

-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
- 상정 의안 심의
 - 제 1호 의안. 2020년도 감사보고서 승인
 - 제 2호 의안. 2020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2020년도 사업평가(안)
 - 2020년도 결산(안)
 - 제 3호 의안. 손실금 처분 승인
 - 제 4호 의안. 출자금 확정 및 탈퇴자 출자금 반환 승인, 조합원 승계 승인

- 제 5호 의안. 정관개정 승인
- 제 6호 의안.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2019년 활동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 제 7호 의안. 임원선거

○ 기타.

■ 폐회 선언

< 2차 대의원 총회 >

-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
- 상정 의안 심의
 - 제 1호 의안. 이사장 선출 승인

○ 기타.

■ 폐회 선언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5호 의안] 안성의료협동조합 정관 개정의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현재 정관에 의하면 우리 임원의 임기는 단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해 실제 임원선거는 정기결산총회에서 진행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임기의 오차를 바로 잡기 위한 정관변경이 필요한바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위해 정관변경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성의료협동조합정관 개정 안

구(舊) 조문	신(新) 조문	비 고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일수계산하지 아니하며 임기 마지막 년도 정기총회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구(舊) 조문	신(新) 조문	비 고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6호 의안] 2020년도 결산승인 및 손실금 처분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2020년도 수지결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의 수지결산안 및 결산에 따른 손실금 처분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금액(원)	비 고
① 전기 이월 손실금	(-)163,032,210	2019년 당기 순손실금
② 당기 순이익 (재가장기미포함)	23,124,274	√ 본점 당기순손실: (-)73,091,640원 √ 3동지점 당기순이익: 12,040,507원 √ 서안성지점 당기순이익: 84,175,407원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당기순손실: (-)24,739,079원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당기순이익: 48,763,593원
③ 법정적립금	6,937,282	당기 순이익의 30% 적립
④ 당기 재가 장기 순이익 재가장기적립금으로 적립	24,024,514	2018년 6월 재가장기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이후 순이익은 조합수익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단독 적립.(방문간호, 방문요양)
⑤ 누적 미 처분 손실금	(-)146,845,218	①+(②-③)=⑤ 차기년도로 이월
참고	▶ 임의적립금 누적액	30,113,622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

▶ 법정적립금 누적액	91,359,490원
▶ 신사업특별 적립금 누적액	287,855,183원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7호 의안] 안성의료사협 12기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건강마을위운회) 금번 정기대의원결산총회에서 1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임원 선거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하려고 하는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2기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위원	비고
이 기 범	전 이사장
전 미 순	전 이사
이 종 우	전 이사, 감사
정 진 식	전 이사
황 운 용	전 이사, 감사

** 위원장은 이기범 전 이사장으로 함.

○ 참고 : 관련 규약, 임원선거관리규약

제4조 【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 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8호 의안] 주간보호시설 준비위원회 신설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현재 몇 개월 뒤(2021년 7월)가 되면 계획에 잡혀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설립, 운영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준비를 해야 하는바 주간보호시설 준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간보호시설 준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구성	비고
이 용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부이사장 ▶ 전 비전실행위원회 위원 ▶ 꿈의 호수촌 선진지견학단 단장
권 성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의원 원장 ▶ 전 비전실행위원회 위원 ▶ 현 우리동네통합돌봄시범사업단 구성원

이 순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한의원 부원장 ▷ 현 우리동네통합돌봄시범사업단 구성원
박 대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조합원 ▷ 전 비전실행위원회 위원 ▷ 꿈의 호수촌 선진지견학단
김 대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전무이사 ▷ 전 비전실행위원회 위원
유 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센터장 ▷ 현 우리동네통합돌봄시범사업단 구성원
윤 재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사업총괄실장 ▷ 전 비전실행위원회 위원
남 수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우리동네통합돌봄시범사업단 단장 ▷ 향후 통합돌봄사업 주요 실무 예정
정 은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역복지사업 책임자 ▷ 현 우리동네통합돌봄시범사업단 구성원
김 영 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시설 운영 책임자 후보 ▷ 통합돌봄 및 건강관리, 예방사업 유경험자 ▷ 향후 통합돌봄사업 주요 실무 예정
** 위원장은 이용자 부이사장으로 함.	

○ 주간보호센터 준비위원회의 역할

- ▷ 주간보호센터 운영 정체성 확립
- ▷ 주간보호센터 운영 콘텐츠 개발
- ▷ 주간보호센터 운영 세부프로그램 개발
- ▷ 주간보호센터 인허가 사항
- ▷ 주간보호센터 인력계획
- ▷ 주간보호센터 고정자산 취득 계획
- ▷ 설립 이후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돌봄사업들의 운영
 - : 돌봄사업운영위원회로 명칭 전환, 주간보호사업 방문요양사업, 방문간호사업을 운영
- ▷ 자원봉사자의 관리
- ▷ 참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사례회의
- ▷ 참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
 - : 주치의관리 연계(만성질환, 검진, 예방사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역복지 자원연계

[결정사항] 서면결의서를 통해 21명 중 무효 2명, 찬성 18명으로 원안대로 승인